의안 번호	353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06. 0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안향자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353호

다. 제출일자 : 2021. 05. 27.

라. 회부일자 : 2021. 05. 28.

2.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05. 28. ~ 2020. 06. 04.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임신 · 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는 2013년에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현황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 전국 158개소 (서울시 27개소) - '21. 5월 기준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 **시설현황**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지정·운영(설치년도 : 2013년)

구 분	성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법인	(사)한국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한기장재단
센 터 장	진정욱	이진이
소 재 지	보문로 183, 논현빌딩 7층	솔샘로5길 92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직 원 수	11명(센터장 포함)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3명, 교육담당 2명)	8명(센터장 포함) (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2명)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여 성북구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21. 5월 현재 전국 117개 광역·기초지자체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서울은 서울특별시와 강북, 서초 등 18개구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관 계 법 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망직종 선정 · 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